

2019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

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?

-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*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	교육비	· (집중 신청기간) 2019년 3월 4일(월) ~ 3월 22일(금) ※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,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
	교육급여	· (집중 신청기간) 2019년 3월 4일(월) ~ 3월 22일(금) (상시 신청 가능)
신청 방법	교육비 교육급여 (공통)	· (방문 신청) 주민등록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· (인터넷 신청) 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, 복지로(bokjiro.go.kr)
구비 서류	교육비 교육급여 (공통)	· (주민센터 비치 서류)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· (개인 구비 서류)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, 통장 사본(교육급여 신청 시), 신분증 지참(교육비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)
선정 기준		· 시·군·구에서 신청자 기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“소득인정액” 기준

- *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, '19.3.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<http://oneclick.moe.go.kr>)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※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.

■ 지원 대상

- 교육비: 시·도별,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

순	자격 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		고교 교과서
					PC	인터넷(유해차단)	
1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전체	무상급식(중식)	전체	전체	전체	전체
2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○		○	○	○	○
3	법정차상위대상자	○		○		○	○
4	기타 소득기준	중위소득 68%이하		중위소득 70%이하		중위소득 30%이하	중위소득 68%이하
5	학교장 추천	○		○			○

※ 2019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비(수학여행)·교복비는 중위소득 등과 관계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 (수학여행-초·중·고 수학여행 실시학년 학생 전원, 교복비-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·편입생 전원)

○ 교육급여: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전국 동일)

<참고> 기준 중위소득: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%는 '19년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. (단위 : 원)

중위소득 가구원수	2인	3인	4인	5인	6인
중위소득(100%)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
중위소득(50%)	1,453,264	1,880,016	2,306,768	2,733,520	3,160,272
중위소득(68%)	1,976,439	2,556,822	3,137,204	3,717,587	4,297,970
중위소득(70%)	2,034,570	2,632,022	3,229,475	3,826,928	4,424,381
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(※시·군·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)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}^{\circledR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\circledR}$$

①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 ② (각종 재산-기본 공제액-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

*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: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,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이 더 높습니다. (교육급여에 서 탈락하였는데,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)

■ 지원 내용

○ 교육비

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지원		고교교과서
				pc	인터넷	
지원내용	입학금·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	학기중 중식비 (무상)	(초·중·고) 연 60만원	가구별 컴퓨터 (고23 제외)	인터넷통신비 (유해차단)	교과서 실비
지원방식	학교 납부액 지원(감면)			설치	통신사	학교 납부액 지원

○ 교육급여: 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비, 입학금·수업료 지원

구분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대금	입학금/수업료
초등학생	132,000원	71,000원	-	-
중학생	209,000원	81,000원	-	-
고등학생	209,000원	81,000원	교과서 실비	학교장 고지금액
지원 횟수	연 1회	연 1회	연1회	수업료(분기별)
지원 방식	수급자 계좌로 지급			학교 납부액 지원

*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·전기 요금 할인, 문화누리카드 발급,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 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)

□ 문의: (행정실) 063-240-1707, (중앙상담센터) 1544-9654

2019. 3. 5.

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

